

# 서울시설공단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

제정 2018. 12. 14.  
 개정 2019. 7. 9.  
 2019. 11. 21.  
 2019. 12. 10.  
 2020. 11. 10.  
 2021. 6. 17.  
 2021. 7. 17.  
 2021. 9. 17.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본 이용약관(이하 '약관'이라 한다)은 서울시설공단(이하 '공단'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월 정기 주차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월 정기 주차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, 신청한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·출차 하여 주차하는 행위
2. 월정기권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, 신청한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·출차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용권
3. 야간 월정기권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한 주차장을 야간시간(19시~익일09시)에만 입·출차 하고 주차할 수 있는 월정기권
4. 전일 월정기권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한 주차장을 24시간 종일 자유롭게 입·출차 하고 주차할 수 있는 월정기권
5. 신청 개시일: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익월 월정기권을 신청 및 결제할 수 있는 시작일자
6. 선착순 방식: 각 주차장별 신청 개시일 09시부터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월정기권 결제기회를 제공하는 방식
7. 추첨 방식: 추첨방식을 적용하는 주차장에 한해 18일 09시부터 22일 23시까지 월정기권을 접수하면, 공고매수 만큼 전산을 통해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월정기권 결제기회를 제공하는 방식
8. 시간주차요금: 각 주차장별로 급지에 따라 정해진 5분당 주차요금에 따

라 계산된 이용요금

9. 감면대상자: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7조에 의거,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
10. 신청자: 월정기권 이용을 희망하여 해당 주차장 월정기권을 신청하고 선착순 안에 들어 결제기회가 부여된 자
11. 취소자: 월정기권 이용 개시일 전에 이용 의사가 없어져서 월정기권 신청 또는 결제를 철회한 자
12. 이용자: 본 약관에 동의하여 월정기권을 신청·결제 후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
13. 대기 순번자: 월정기권 사용을 희망하여 정기권을 접수하였으나 선착순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려 결제하지 못하고 대기번호를 부여받은 자
14. 신청일: 월정기권의 이용을 희망자가 인터넷을 통해 이용희망 주차장의 월정기권을 접수한 일자
15. 공고매수: 주차장별 상황을 고려하여 당월 인터넷으로 판매하기로 계획한 월정기권의 매수
16. 개인차량: 사업자(법인, 개인)차량이 아닌 이용자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리스·렌트한 차량
17. 가족차량: 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표기되는 가족의 차량 또는 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
18. 사업자(법인, 개인)차량: 법인 명의로 등록(소유) 또는 법인 명의로 리스·렌트한 차량 및 개인 사업자 명의로 등록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리스·렌트한 차량
19. 잔여분: 신청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월정기권 인터넷 판매 후 남은 분량
20. 사용 개시일: 이용자에게 월정기권 서비스 공급이 시작되는 날로, 매월 1일 또는 잔여분 구매 시 결제일자

### 제3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- ① 본 약관은 월 정기 주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② 이용자는 월정기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,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월정기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③ 공단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④ 공단은 전항에서 규정한 약관의 개정사항이 이용자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30일 이상 사전 공지하여야 합니다.

**제4조(이용계약의 성립)**

본 약관에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물음에 “동의” 의사를 표시할 경우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**제2장 서비스의 이용**

**제5조(월 정기 주차 운영 주차장)**

구분	주차장명	위치	급지	신청 개시일
선착순	가양라이프	강서구 가양동 1457-1	2	22일
	개화산역	강서구 방화동 845	1	19일
	개화역	강서구 개화동 664	1	20일
	구파발역	은평구 진관동 66-30	1	24일
	도봉산역	도봉구 도봉동 288-19	1	21일
	동대문	중구 신당동 251-7	1	22일
	마장동	성동구 마장동 459-6	3	20일
	마포유수지	마포구 마포동 36-1	2	22일
	북정역	송파구 장지동 561-9	1	19일
	사당노외	서초구 방배동 507-1	1	23일
	서린노외	종로구 서린동 63	1	22일
	세종로	종로구 세종로 80-1	2	24일
	수락산역	노원구 상계동 1268	1	23일
	수서역	강남구 수서동 735	1	21일
	신방화역	강서구 마곡동 739	1	25일
	신월4동	양천구 신월동 411-1	3	18일
	신천유수지	송파구 신천동 14	1	24일
	영등포구청역	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-3	1	23일
	용산주차빌딩	용산구 한강로2가 12-9	2	25일
	웃우물	양천구 신정동 943-25	2	20일
	일원터널	강남구 일원본동 722-1	3	19일
	잠실역	송파구 잠실동 29	1	18일
	장안1동	동대문구 장안동 392-3	3	18일
	장안2동	동대문구 장안동 286-9	3	20일
	종묘	종로구 훈정동 2	1	19일
	천왕역	구로구 오류동 174-10	1	21일
	천호역	강동구 천호동 455	1	26일
	학여울역	강남구 대치동 514-1	2	24일

	한강진역	용산구 한남동 산 10-84	1	21일
	화랑대역	중랑구 묵동 28	1	25일
	훈련원공원	중구 을지로5가 40-3	1	23일
추첨제	구로디지털단지역	구로구 구로동 1123	1	18~22일 접수
	신대방역	동작구 신대방동 643-1	1	

### 제6조(신청자격)

- 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일반시민 누구나(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)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인 타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와 타시도 소재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- ② 옷우물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카니발, 스타렉스, 렉스턴, 신형에쿠스, 체어맨, 베라크루즈, 코란도 밴 등 높이 185cm 또는 너비 192cm 또는 길이 505cm 또는 중량 2,200kg 이상의 중, 대형 차량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- ③ 신월4동 주차장은 반자주식 주차장으로 자동차등록증 상 길이 480cm, 폭 200cm, 높이 170cm, 총중량 2,500kg 어느 하나 초과 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- ④ 각 주차장별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.

### 제7조(이용기간 및 이용시간)

- ① 이용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당월 말일 24시까지이며,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. 이용시간은 전일(24시간) 주차할 수 있습니다. 단, 야간 월정기권 이용자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 19시부터 익월 1일 09시까지입니다.

※ 이용기간 중 중도구매 시 이용기간 : 구매일부터 말일까지

※ 야간정기권 이용시간 : [평일] 19시부터 익일 09시

[주말·공휴일] 전일 19시부터 주말·공휴일 종료 익일 09시

- ② 전일 월정기권 또는 야간 월정기권 이용 차량은 이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 그 외의 주차는 시간주차요금을 적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,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제8조(이용요금)

- ① 주차 구획 사용 요금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6조의 [별표1]에 규정된 해당 급지별 월정기권 요금으로 정하고, 해당 조례 제7조에 의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합니다.
- ②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6조의 [별표1]에 따라 주차요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미세먼지 시준제 시행에 따라 기간별로 약관의 [별표2], [별표3]과 같이 주차장별 월정기권 요금이 조정됩니다.

### 제9조(감면대상 및 제출서류)

- ① 감면대상자의 경우 신청 시 감면자격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셔야 하며, 별표 1에 따라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(업로드)해주셔야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.
  - 1. 사업자(법인, 개인) 차량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(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의상자, 5.18민주유공부상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, 환승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병역명문가)은 불가합니다. 다만, 차량을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(경차, 저공해자동차)은 적용 가능합니다.
  - 2. 장애/유공 감면대상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, 렌트차량 계약서 등 임차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②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.
- ③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동미만 상세주소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바랍니다.
- ④ 증빙서류 허위등록 또는 미등록 시 해당 월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되며, 등록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.

### 제10조(이용신청)

- ① 공단에서 운영하는 월정기권은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 및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, 매월 신청 및 구매하셔야 합니다. 월정기권은 차등 없이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는 선착순 방식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일부 경쟁이 치열한 주차장(신대방역, 구로디지털단지역)은 전산에 의한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.

※ 예시: 2월에 월정기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1월에 인터넷으로 신청

② 월정기권 신청은 제5조의 각 주차장별 정해진 신청 개시일 오전 09시부터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입니다. 신청 개시일은 공휴일과 관계없습니다.

1. 교통약자인 장애인·국가유공상이자·고엽제후유(의)증환자·의상자·독립유공자·5.18민주유공부상자·보훈보상대상자(재해부상군경,재해부상공무원)는 주차장별 신청 개시일의 하루 전일부터 우선 신청 가능합니다.

2. 추첨제 주차장의 월정기권 신청일은 매월 18일~22일이며, 추첨 결과는 매월 23일에 발표됩니다.

3. 정기권 잔여분은 전월 말일까지 선착순 판매 후 대기접수자가 없는 주차장에 한하여 판매하며, 매월 1일~15일동안 잔여분 소진시까지 판매합니다.

③ 차량번호 기준 주차장 1곳만 신청 가능하며, 동일 핸드폰 번호(아이디)당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.

④ 해당 대기 순번은 신청하신 월의 말일까지만 유효합니다.

⑤ 취소자가 발생하여 대기 순번자에게 결제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문자로 연락하므로 연락처는 항상 최신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.

### 제11조(이용요금의 납부)

① 월정기권 이용 요금은 정기권 신청 후 익일 23시까지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(ISP),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 추첨제 주차장의 경우 추첨결과에 따라 24일~25일 23시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② 신청자는 익일 23시까지 결제하셔야 하며, 결제일이 경과되면 신청이 취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단, 신청일이 말일인 경우 또는 잔여분 구매 시에는 당일 23시까지 결제하셔야 합니다.

## 제3장 이용변경 및 취소

### 제12조(사정변경)

월 정기 주차 수요 및 시간제 주차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일부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 주차 차량을 배정하는 것이므로, 시간제 주차 수요, 주차장 현장상황 등으로 주차장 만차 발생 시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월정기권의 공고매수는 매월 변경이 가능합니다.

### 제13조(이용변경)

① 이용 개시 후 차량번호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하며,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1. 개인차량의 차량번호 단순변경은 월1회에 한하여 본인 또는 가족(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)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. 단,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빙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은 변경 가능합니다.

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·후 자동차등록증과 가족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※리스차량 이용 시: 리스(렌탈) 이용확인서 추가 제출

2. 개인차량이 사고 또는 수리로 인해 차량번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렌트카 또는 가족(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)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. 단,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빙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은 변경 가능합니다. 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·후 자동차등록증, 사고증빙서류(보험사고증명원 또는 사고사실확인원) 또는 수리증빙서류(수리내역서)와 가족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. 사업자(법인, 개인)차량의 차량번호 단순변경은 월정기권 이용 개시 전 월 1회, 개시 후 차량변경 이력이 없는 차량에 한하여 월 1회 가능합니다. 차량 변경 시 동일 사업자(법인, 개인) 명의 차량 또는 동일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.

4. 사업자(법인, 개인)차량의 폐차, 매각, 렌트차량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차량번호를 변경할 경우 월 1회 변경 가능합니다. 사고 또는 수리로 인해 차량번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 명의의 렌트카로 변경 가능합니다. 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·후 자동차등록증, 사고증빙서류(보험사고증명원 또는 사고사실확인원) 또는 수리증빙서류(수리내역서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② 이용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 기간 중 임시 차량 사용 필요시 공단에 연락을 하여 사전에 변경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 조치를 받으신 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
### 제14조(이용요금의 반환)

- ① 이용 개시 전 환불신청 시에는 전액 환불됩니다.
- ② 이용 개시 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, 월정기권 사용 개시일(매월 1일 또는 잔여분 구매시 결제일)로부터 7일까지만 환불 가능합니다. 개시 후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서 접수 후 이용 포기일부터 일할계산 되어 환불됩니다.

### 제15조(직권취소)

- ① 월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.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(무작위 현장점검 실시)이 밝혀질 경우 월정기권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,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월정기권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, 월정기권 이용이 1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.
  1.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(영업행위, 적치물 적재,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,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)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
  2.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
  3.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방치하여 이용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
  4.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
  5. 기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,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
  6. 주차장의 운영시간 중 장기주차(14일이상연속)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
- ③ 장기주차 위반에 따른 제한기준은 [별표 4]에 따릅니다. 위반내역은 최초 위반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. 단, 장기주차의 비고의성(교도소 수감, 차량도난, 차주사망, 입원치료, 장기출장, 장기여행 등) 입증시 예외를 적용합니다.
- ④ 정기권 이용자는 ②에 따른 정기권의 직권취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##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
### 제16조(차량파손 등의 책임)

-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차량에 흠집 또는 기타 문제 발생을 공단에 배상·처리를 요구하실 때에는 이용자(피해자)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공단은 사고 정황을 확인

합니다.

② 공단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,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공단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정황을 확인하여 배상처리하고 있으며,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,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**제17조(이용자의 권리)**

-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(매월 1일~말일) 동안 자유롭게 주차 구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장기주차(14일이상 연속 주차) 시 정기권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, 월 정기 주차 구획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제 이용 차량 현황에 따라 주차장 만차 시 대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② 월정기권 신청 시, 대기 순번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**제18조(이용자의 의무)**

- ① 월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, 대여,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.
- ②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③ 주차 시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,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, 여성우선주차구획, 전기자동차우선주차구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④ 차내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, 차량으로부터 이탈 시 반드시 차문을 잠궈야 합니다. 차량내의 귀중품은 분실, 도난 시 주차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⑤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.

**제19조(기타)**

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‘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’에 따릅니다.

**..... 부 칙 .....**

- 1. 본 약관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.

2. 본 약관 조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, 관리기관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“동의”하며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이용을 신청합니다.

3. [별표 4]의 이용제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[별표 1]

감면자격별 제출(증빙)서류 및 감면요건 (제7조 관련)

감면자격	제출서류	공통 제출서류	감면요건
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	▶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 또는 ▶ 국가유공상이자증 또는 ▶ 고엽제환자 등록확인증 또는 ▶ 의상자증 또는 ▶ 독립유공자증	[필수] 자동차등록증 1부  ※ 가족차량(감면자격과 차량명의를 상이)인 경우 : 자동차등록증 + 신청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	장애인지동차표지 부착 및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(공통)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
환승	▶ 재직(학)증명서, 학원수강내역서, 의료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목적지 증빙서류 ▶ 주민등록등본(거주지 확인용) ▶ 명함(재직증명서상 주소 미기재시 제출)		목적지와 출발지가 모두 주차장 각 입·출구 기준 반경 1km 이상만 인정  *환승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
경차	-		-
저공해자동차	① 저공해차량 발급 도장날인 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② 환경부 발행 저공해자동차증명서 (차대번호 기재분) 또는 ③ 자동차등록원부(저공해 신청 원부 기재) 또는 ④ 환경부 발행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사진 및 확대사진		-
경차 환승/ 저공해 환승	▶ 경차+환승(각 해당 증빙서류) ▶ 저공해+환승(각 해당 증빙서류)		목적지와 출발지가 모두 주차장 각 입·출구 기준 반경 1km 이상만 인정  *환승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
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	▶ 서울시장 발행 다둥이행복카드 (신청인과 카드명의로자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)		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(막내나이 만13세,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만 적용)
5.18민주유공 부상자	▶ 5.18민주유공상이자증		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
참전유공자	국가유공자증(참전유공자 표시) 참전유공자증, 참전유공자확인서		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
병역명문가	병역명문가증,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		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(서울시 거주자만 감면대상)
보훈보상대상자 (재해부상군경,재 해부상공무원)	▶ 보훈보상대상자증		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
중대형 차량 (화물·승합)	-	중대형 차량은 각종 감면혜택 미적용	

[별표 2]

〈월 정기권 이용요금〉

(단위 : 원)

주차장명	급지	정기권 이용요금					
		일반	야간	환승	장애/유공	저공해차/ 경차	환승이용 저공해차/ 환승이용 경차
가양라이프	2급지	91,000	-	-	18,200	45,500	-
개화산역	1급지	91,000	28,000	56,000	18,200	45,500	18,200
개화역	1급지	91,000	-	56,000	18,200	45,500	18,200
구파발역	1급지	91,000	28,000	56,000	18,200	45,500	18,200
도봉산역	1급지	91,000	-	56,000	18,200	45,500	18,200
동대문	1급지	225,000	-	112,000	45,000	112,500	-
마장동	3급지	80,000	-	-	16,000	40,000	-
마포유수지	2급지	162,000	-	81,000	32,400	81,000	-
북정역	1급지	91,000	-	56,000	18,200	45,500	18,200
사당노외	1급지	182,000	-	91,000	36,400	91,000	-
서린노외	1급지	280,000	-	-	56,000	140,000	-
세종로	2급지	252,000	-	-	50,400	126,000	-
수락산역	1급지	91,000	28,000	56,000	18,200	45,500	18,200
수서역	1급지	168,000	42,000	91,000	33,600	84,000	-
신방화역	1급지	91,000	28,000	56,000	18,200	45,500	18,200
신월4동	3급지	80,000	-	-	16,000	40,000	-
신천유수지	1급지	140,000	-	72,000	28,000	70,000	-
영등포구청역	1급지	112,000	-	56,000	22,400	56,000	-
용산주차빌딩	2급지	168,000	-	84,000	33,600	84,000	-
웃우물	2급지	140,000	-	72,000	28,000	70,000	-
일원터널	3급지	70,000	-	-	14,000	35,000	-
잠실역	1급지	250,000	-	125,000	50,000	125,000	-
장안1동	3급지	90,000	-	-	18,000	45,000	-
장안2동	3급지	70,000	-	-	14,000	35,000	-
종묘	1급지	250,000	-	-	50,000	125,000	-
천왕역	1급지	91,000	-	56,000	18,200	45,500	18,200
천호역	1급지	140,000	-	72,000	28,000	70,000	-
학여울역	2급지	140,000	-	72,000	28,000	70,000	-
한강진역	1급지	168,000	84,000	84,000	33,600	84,000	-
화랑대역	1급지	54,000	28,000	42,000	10,800	27,000	10,800
훈련원공원	1급지	252,000	-	-	50,400	126,000	-
구로다지탈단지역	1급지	140,000	56,000	72,000	28,000	70,000	-
신대방역	1급지	140,000	-	72,000	28,000	70,000	-

[별표3]

〈월 정기권 이용요금(배출가스 5등급 차량)〉

(단위 : 원)

주차장명	급지	미세먼지 시즌제(12월~3월) 이용요금		
		배출가스 5등급 차량		
		일반	환승	야간
가양라이프	2	136,500	-	-
개화산역	1	136,500	84,000	42,000
개화역	1	136,500	84,000	-
구파발역	1	136,500	84,000	42,000
도봉산역	1	136,500	84,000	-
동대문	1	337,500	168,000	-
마장동	3	120,000	-	-
마포유수지	2	243,000	121,500	-
북정역	1	136,500	84,000	-
사당노외	1	273,000	136,500	-
서린노외	1	420,000	-	-
세종로	2	378,000	-	-
수락산역	1	136,500	84,000	42,000
수서역	1	252,000	136,500	63,000
신방화역	1	136,500	84,000	42,000
신월4동	3	120,000	-	-
신천유수지	1	210,000	108,000	-
영등포구청역	1	168,000	84,000	-
용산주차빌딩	2	252,000	126,000	-
웃우물	2	210,000	108,000	-
일원터널	3	105,000	-	-
잠실역	1	375,000	187,500	-
장안1동	3	135,000	-	-
장안2동	3	105,000	-	-
종묘	1	375,000	-	-
천왕역	1	136,500	84,000	-
천호역	1	210,000	108,000	-
학여울역	2	210,000	108,000	-
한강진역	1	252,000	126,000	126,000
화랑대역	1	81,000	63,000	42,000
훈련원공원	1	378,000	-	-
구로디지털단지역	1	210,000	108,000	84,000
신대방역	1	210,000	108,000	-

※조례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요금에서 감면비율만큼 할인됩니다.

[별표4]

〈정기권 장기주차 제한기준〉

위반기준	제한사항
1회 위반시	장기주차 위반사항 고지
2회 위반시	익월로부터 1개월
3회 위반시	익월로부터 3개월
4회 위반시	익월로부터 6개월
5회 위반시	익월로부터 1년간

※ 위반내역은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간 유효

※ 장기주차의 비고의성(교도소 수감, 차량도난, 차주사망, 입원치료, 장기출장, 장기여행 등) 입증 시 예외 적용